# 보험금 청구서

00850101

접수방법 : ☐ FC ☐ 내방 ☐ 우편 ☐ 팩스

개인(신용)정보 규제 강화로 인해 「개인(신용)정보 수집 · 이용,조회,제공 동의서」는 필수로 작성해 주셔야 하며, 보험금 청구 서류와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.

## | 청구 세부 내용 |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청구사유 | ☐ 사망 ☐ 장해 ☐ 진단 ☐ 입원 ☐ 수술 ☐ 실손입원 ☐ 실손통원 ☐ 실손처방 ☐ 치아치료 | | | | |
| 발생원인 | ☐ 질병 ☐ 암 ☐ 재해 ☐ 자살 ☐ 특정질병 | | | 입원일수 | 일 (첫 날 포함) |
| 기 타 | ☐ 유족/장해연금, 당뇨관리지원금 ( ☐ 일시금, ☐ 정기금) ☐ 기타 ( ) | | | | |
| 사고내용 | 사고일시 | 년 월 일 시 | 사고장소 | 탑승차량 | |
| | 사고경위 | | | 탑승위치 | ☐ 운전석 ☐ 조수석 ☐ 뒷자석 ☐ 보행중 ☐ 기타( ) |
| 실손의료비 청구시 | 병 명 | | | 현재직업 | |
| | * 실손 통원(외래 • 처방) 청구에 한하며, 치료병명이 2개 이상인 경우 영수증 상단에도 각각 병명을 작성 (단, 추가적 심사필요 판단시 병명증빙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) | | | 의료급여 수급권자 | 예 ☐ |
| 타사 가입내역 | 보험회사 | | | 청구결과 | |

## |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정보 |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성 명 | | 주민번호 | - | 연 락 처 | - - |

## | 보험수익자(보험금수령자) 정보 |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성 명 | 상 동 | 주민번호 | - | 연 락 처 | - - |
| 주 소 | | | | E-mail | @ |
| 보험금 수령 계좌 (택1) | ☐ 자동이체 | * 예금주가 수익자와 동일한 경우에만 선택 가능<br>* 수익자 명의의 자동이체 계좌가 다수 등록된 경우, 아래에 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를 직접 기재 | | | |
| | ☐ 직접기재 | 은 행 명 | 계좌번호 | 예 금 주 | |

## | 접수 및 심사 진행 현황 (지연 및 지급 내역 등) 안내 서비스 |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안내 방법 (택1) | ☐ 문자메시지 (SMS) | ☐ E-mail | ☐ 우편 | ☐ 미신청 (지급 시에 한해 유선 안내) |
| | * 문자 메시지를 선택하신 경우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. (알림톡 수신 거부시 SMS 발송)<br>* 지연 안내장은 선택과 관계없이 모범규준에 따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. | | | |

### 필수 안내사항 및 확인 서명

■ 상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보험업법 제95조의 2 제3항, 제4항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고, 청구 양식의 개인(신용)정보 수집 · 이용, 조회, 제공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합니다.

- 청구하신 보험금은 지급사유가 인정될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(단,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)에 심사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지급기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예상 지급일을 별도 안내하여 드리며, 해당 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 또는 외부 위탁업체가 약관에 의거 의료기관이나 관공서에 대한 확인이 있을 수 있으며, 그에 따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사망보험금 지급시 미납된 보험료가 있는 경우, 회사는 상법 제639조 3항에 따라 미납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.
- 문의처 : 콜센터 1588-5005 / 서류 송부처 : 우편번호 0451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(순화동, 오렌지센터), 1층 보험금 접수처

년 월 일

피보험자와의 관계 : _____ 보험수익자 (청구인) : _____ (서명)

※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일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.

| 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지점접수인 | | 접수자소속 | | FC명 | | FC코드 | |
| | | 접수자명 | | SMS 수신여부 | ☐ YES ☐ NO | 휴대폰 번호 | |

#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

| 구분 | | | 구비서류 |
|---|---|---|---|
| 공통 | 필수 | 기본 | • 보험금 청구서 •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 • 수익자 신분증 사본(앞면) |
| | | 추가 | • 사전 미등록 계좌인 경우 : 통장 사본<br>• 미성년수익자인 경우 : 미성년수익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및 기본증명서(상세) 첨부 (친권자 확인)<br>• 배우자 보장 상품인 경우 : 배우자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|
| | 재해사고 시 | 재해입증서류 (택1) | ① 교통사고 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, 손해보험사, 공제조합(버스, 화물, 택시 등) 사고사실확인서<br>② 산업재해 :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<br>③ 군인재해사고 : 공무상병인증서<br>④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: 법원판결문<br>⑤ 기타 재해사고 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 사고사실확인서<br>⑥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: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|
| 사망 | | 기본 | • 사망일자, 사망원인 확인 서류(선택 가능)<br>①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원본<br>②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사본 및 기본증명서(사망사실 기재) |
| | | 추가 | •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<br>– 상속인 :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, 상속인 각각의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<br>– 상속관계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기본증명서(상세) 등)<br>• 시체검안서인 경우<br>– 사고내용이 확인되는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변사사실확인원 (경찰서 발행)<br>• 자살: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변사사실확인원(경찰서발행) |
| 장해 | | 기본 | • 후유장해진단서 ※ (일반) 진단서로 대체가능한 장해인 경우에 (일반) 진단서 제출 (추가 참조) |
| | | 추가 | • (일반) 진단서 제출 시 필요 서류<br>① 만성신부전(최초 혈액투석일,환자상태 기재)<br>② 사지절단(수술일자, 절단부위 명시, 현재상태(접합여부 등) 기재) : X-RAY 판독결과지<br>③ 인공관절치환술(수술명, 수술부위, 수술일자 기재)<br>④ 비장·안구적출(수술명, 수술일자 기재)<br>⑤ 심장/신장/간장의 장기이식(수술명, 수술일자 기재) |
| 진단 | 암 | | • 진단서(최종진단명, 질병분류코드 포함)및 암진단 확진 조직검사결과지<br>– 백혈병 : 골수검사결과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<br>– 간/폐/췌장암 : 방사선 판독결과지(조직검사를 못할 경우) 대체 가능 |
| | 뇌출혈·뇌경색 | | • 진단서(최종진단명, 질병분류코드 포함) 및 각종 검사결과지 [CT, MRI, 방사선 판독 결과지 등] |
| | 심근경색 | | • 진단서(최종진단명, 질병분류코드 포함) 및 각종 검사결과지 [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, 심전도결과지, 심근효소검사결과지 등] |
| | 당뇨 | | • 진단서(최종진단명, 질병분류코드 포함) 및 당화혈색소(HbA1c) 수치를 포함한 진료기록부 [검사기록지 포함 등] |
| 수술 | | 기본 | • 진단명(질병분류코드) · 수술명 ·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[예 : 수술확인서, 진단서, 치료확인서 등] |
| | | 추가 | • 수술방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 요청할 수 있음 [증빙 서류 예시 : 수술기록지,진료차트(치조골이식 등)] |
| 입원 | | | • 진단명(질병분류코드) ·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(선택 가능) ①진단서 ②입퇴원확인서 ③소견서 |
| 골절 | | | • 진단명(질병분류코드) ·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(선택 가능) ①진단서 ②통원확인서·입퇴원확인서 ③소견서 |
| 실손 | 입원 | | • 진료비 계산서 ·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<br>• 진단명(질병분류코드) ·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(선택 가능) ①입퇴원확인서 ②진단서 |
| | 통원 (외래·처방) | 기본 | • 진료비 계산서 ·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<br>– 3만원 이하 : 진료비 계산서 · 영수증(청구서 병명 기재)<br>– 3만원 초과 : 진료비 계산서 · 영수증, 처방전(질병분류코드 기재)<br>※ 금액구분은 동일사고당 영수금액 기준<br>• 처방의 경우 : 일자별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및 처방전 |
| | | 추가 | •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 요청할 수 있음 [증빙 서류 예시 : 진단서, 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소견서, 진료차트 등] |
| 치아치료 | | | • 치아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참조(해당 약관 및 홈페이지) |
| ※해외병원 | | | • 기본 서류는 국내와 동일 (실손의료비는 보상 대상 제외)<br>• 환자의 인적사항, 진단명, 발행 의료기관 및 발행인의 인적사항, 의료기관의 직인 혹은 주치의의 서명 날인된 원본진단서만 인정 |

·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탈사이트 민원24시(www.minwon.go.kr)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 (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)
· 서류별 발급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(http://www.hira.or.kr) 홈페이지(병원 · 약국-비급여진료비정보)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· 보험금 청구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· 상기 안내장은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기본 서류를 기재한 것으로 사고내용, 특성, 상품(보장내역)에 따라 추가 심사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· 모든 청구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. (※ 10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(사망/장해/진단/납입면제 청구사유 제외)시, 상기 제출서류는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.)
·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(1588-5005) 문의 및 홈페이지(www.orangelife.co.kr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· 서류 송부처 : 우편번호 0451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길 37 (순화동, 오렌지센터), 1층 보험금 접수처

# 보험금 · 제지급금 청구를 위한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

02690101

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귀중

**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**

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관련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고,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(신용)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
## 1.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**수집·이용** 하고자 합니다. **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**

■ **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**
- 보험금지급·심사(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) 및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, 보험금지급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
- 금융거래(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·수납을 위한 금융거래 신청, 자동이체 등 접수) 관련 업무

■ **수집·이용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**
- 개인식별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운전면허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, 음성정보 등), 계좌번호
-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(신용)정보
(경찰, 공공기관,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, 증명서,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포함)

■ **개인(신용)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**
- 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(단,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, 금융사고 조사, 보험사기 방지·적발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·이용하며, 별도 보관)

**동의함 □**

※ 거래종료일이란 당사와의 모든 거래관계가 계약의 만료, 해지/해제/취소, 소멸시효의 완성,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,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뜻합니다. (아래 '2항목' 및 '3항목'에서의 거래종료일도 동일)

## 2. 개인(신용)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

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**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**으로부터 **조회**하고자 합니다. **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**

■ **개인(신용)정보 조회목적**
- 보험금지급·심사(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) 및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

■ **조회할 개인(신용)정보**
- 보험계약정보,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(사고정보 포함), 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

■ **조회동의 유효 기간 및 조회자(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)의 개인(신용)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**
- 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(단,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, 금융사고 조사, 분쟁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·이용하며, 별도 보관함)

**동의함 □**

## 3. 개인(신용)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
당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**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**

■ **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**
- 신용정보집중기관
- 공공기관 등 : 금융위원회, 국토해양부, 금융감독원, 보험요율산출기관, 수사(사법)기관 등 공공기관,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(위탁사업자 포함)
- 보험회사 등 : 생명보험사, 손해보험사, 국내·국외 재보험사, 공제사업자, 체신관서(우체국보험), 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, 금융결제원
- 업무수탁자 등 : 보험금지급·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(보험사고조사업체, 손해사정업체, 의료기관·의사, 변호사, 위탁 콜센타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)

■ **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**
- 신용정보집중기관 :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
- 공공기관 등 : 보험업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(위탁업무 포함)
- 보험회사 등(업무수탁자 등 포함) : 보험사고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,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, 진료비 심사, 의료심사 및 자문
- 금융거래 업무(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·수납)

■ **제공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**
- 「1.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」의 정보내용(단,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)

■ **제공받는 자의 개인(신용)정보 보유·이용기간**
-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(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)

**동의함 □**

※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(www.orangelife.c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 4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개인(신용)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(질병·상해 정보) 및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운전면허증번호)를 처리(수집·이용, 조회, 제공 등) 하고자 합니다. **이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?**

| 질병·상해정보 처리 | 동의함 □ | 주민등록번호·외국인등록번호·운전면허증번호 | 동의함 □ |
|---|---|---|---|

※ 본인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사가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※ 미성년자인 경우,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서명 바랍니다.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 부모 쌍방이 각자 서명해야 합니다. 다만,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.

20 년 월 일 동 의 자 : (서명)

#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장

## |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|

- 청구서 작성시 문자메시지(SMS), E-mail 수신 여부에 동의를 하신 경우, 고객님의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등록된 연락처로 알려드립니다.
-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발송 전 문의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 (Call center : 1588-5005, 상담 가능 시간 : 평일 09시~18시)

청구 서류안내 → 청구 서류접수 → 보험금 심사 및 사고조사 → 보험금 결정 및 지급 → 결정사항 통보

## |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방법 |

- 제출방법 : 설계사(FC) 방문, 고객센터 또는 지점 방문, 모바일센터 앱, 홈페이지 사이버센터, FAX, 등기우편
- 10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사본제출이 가능합니다. (필요시 원본 또는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)

## |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|

-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- 보험금 청구권을 3년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됩니다.(상법 제 662조)

## | 보험금 지급 지연 시 서면통보 및 지급 지연이자 지급 |

- 보험금 예상 지급기일은 최종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,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입니다.
- 회사가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,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.
-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기일 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.

## | 손해 사정사 선임 및 조사 |

- 회사는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,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 등 제 3자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의 개인정보 제공 · 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.
-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거나,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.
-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거나,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(접수가 완료된 날)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합니다.

## |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|

-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작성 ·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.
  단,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(보험업감독규정 제9-20조 제4항)

## |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|

- 장해 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드리며 보험 계약 시기별로 장해 판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병원 진단서 발급 전 Call center(1588-5005)에 문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.
  * 3차 의료기관 :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

## | 의료 심사 |

-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. 제3자는 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, 보험금 지급사유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.

## |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(비례분담 적용) 등 |

- 상해·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접수대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타사에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.
-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계약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

## |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|

-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우편, 문자메시지(SMS), E-mail 수신 동의에 따라 안내되며, 청구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근거 및 사유는 별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.
- 보험금 청구 진행 사항은 모바일센터 앱 및 홈페이지(www.orangelife.co.kr) 사이버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수익자만 가능)

## | 재 심사 청구 |

- 회사의 보험금 부 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재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담당자 : 보험금 처리시 안내 / 전화상담 : Call center 1588-5005 / 우편 : (04511)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37(순화동, 오렌지센터), 1층 보험금 접수처

## | 분쟁조정 절차 및 피해구제 |

- 보험계약 및 사고보험금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번)으로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